

의안번호	제3064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6. 3. 6.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우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4
----------	------

발의연월일: 2026. 3. 6.

발 의 자: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이정숙 의원(8인)

1. 제안이유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 증가 및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치료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치료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64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
- 3)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다. 협 의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협의 완료[사회보장조정과-318(2026. 1. 21.)호]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에서 지자체 지원 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음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라.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6호

- 예고기간: 2026. 3. 6.(금) ~ 3. 12.(목)[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 간염 확진자의 조기 치료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형간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C형간염 확진자”란 C형간염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비”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C형 간염 경구용 치료제 구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치료비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확진검사를 통해 C형간염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건강검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C형간염 확진일 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료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2조~제4조

나. 비용발생 요인: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 10명에게 C형간염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다. 소요예산: 1,000,000원×10명= 10,000천 원(연간)

* 지원 대상 수는 C형간염 항체검사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산정함.

* 2025년 고성군 50대 C형간염 발생 건수: 5건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제정에 따라 치료비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이 연간 10,000천 원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김 영 국

관 계 법 령(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과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찻찻가무시증

카. 렘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梅毒)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5. 제3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5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6. 제4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제9호·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8.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거나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9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0. 제62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10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10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